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843

발의연월일: 2021. 12. 10.

발 의 자: 조태용・이태규・조명희

주호영 · 지성호 · 김상훈

박 진 • 홍문표 • 김기현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 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재외 투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재외국민 수를 4만명 이상으로 기준삼고 있음.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대통령선거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 평균 3.83%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왔고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 투표율은 역대 가장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음. 저조한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투표소 숫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

만명'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안 제218조의17제2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만명을"을 "2만명을"로, "4만명까지마다"를 "2만명까지마다"로, "2개소를"을 "4개소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만명"을 "2만명"으로 한다.

제218조의17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관의 관할구역에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
·운영) ① (생 략)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	
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	
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재외투	
표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u>2</u>
<u>4만명을</u> 넘으면 이후 매 <u>4만명</u>	<u>만명을2만명</u>
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	<u>까지마다</u>
· 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	
소의 총 수는 <u>2개소를</u> 초과할	<u>4개소를</u>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	1 <u>2</u>
<u>만명</u>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	<u>만명</u>
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공관의 관할구역에 영사사무

	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
	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